

제 출 자	제 출 의 건	검 토 의 건
대한불교조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측에서 제시한 종교법인이 설립한 교도소의 경우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활동에 제약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안에서 수용자에게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은 특정종교 신봉자만을 수용하거나 수용자에게 특정종교식의 교화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당연한 요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단서 조항이 필요없음을 통지하였음 ○ 다만, 감독조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와 교정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에 관하여는 당해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교도소 운영주체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권단체와 종교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제3조를 보완하여 가칭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되,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 및 수탁자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교정시설 운영경험 및 전문인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의 제정은 향후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실제 전임의 운영주체가 나갔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길을 열어 놓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당장 민영교도소를 출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님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경과 및 종단대응

1. 법률제정 및 종단대응 경과

- 99년 7월27일 : 입법예고
- 99년 8월13일 :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에 법률제정에 대한 불교계 의견 제출
- 99년 8월24일 : 법무부 회신
- 99년 9월14일 : 법무부에 제2차 불교계의견 제출
- 99년 9월28일 : 법무부 회신
- 99년12월 6일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국회 상정
- 99년12월1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제정에 대한 불교계 의견 제출
- 99년12월1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통과
- 99년12월28일 :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통과
- 99년12월29일 :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에 따른 조계종의 입장 논평 발표
- 2000년 1월 5일 :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제정에 따른 조계종입장 공문 발송

2. 법무부 입법예고안

1) 제정이유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교정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치우기법을 도입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직업교육·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로 함)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으로 함)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의 기간은 당해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게 함.

다.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 위탁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정법인이 아닌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교정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교정법인만이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게 하고, 수탁자가 설립한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처리와 관련한 당해 수탁자의 법령 및 위탁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함.

마. 교정법인은 교정업무의 위탁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비영리법인 또는 사단·재단법인을 불문하도록 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민간참여의 길을 쉽게 하는 반면, 정관·임원·재산 및 회계 등 교정법인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영교도소 등의 부실운영을 방지함.

바. 국가는 교정법인에게 매년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교정자산과 교도소 등의 운영경비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의 처우는 같은 종류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고 있는 국가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하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함.

아. 수용자의 작업수입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국고수입으로 함으로써 민간의 민영교도소 등 운영참여를 유도함.

자.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수용자에 대한 계구·무기의 사용, 병원이송, 귀휴, 징벌 등의 권한행사와 가석방 심사신청, 석방 등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 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 공무원의 승인, 의견서 첨부, 경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형집행의 공정성과 보편성을 보장함.

차.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당해 교정법인이 자율적으로 임면하되, 민영교도소 등의 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카.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행형법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를 행하고, 교정법인의 임·직원 및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다.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민영교도소 등에 소속 공무원을 상주하게 하면서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직권 또는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파. 교정법인은 그 임·직원 및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과(507-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교계 제1차 의견 제출내용

1. 총괄의견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교정교화 시설이 아니라 범죄학교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과밀수용의 해소, 교도행정의 질향상 등을 위해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이 정부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여러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과정과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시행되지 않고 특정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법무부의 성급한 법제정 추진에 반대합니다.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설립은 특정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민영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민영교도소 설립의 주요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교도소의 과밀화 해소는

민영교도소가 아닌 다른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 종교단체에 의한 교도소의 운영은 재소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 또 다른 인권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4) 민영교도소 운영의 전반을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은 너무 성급한 시도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전에 일정한 준비단계와 제도의 단계별 시행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없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은 수탁자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6)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정교화에 민간기법을 도입하여 교정교화 효과를 증대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운영 주체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외국의 운영사례에서와 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적은 인원에 부과된 과중한 업무량, 이에 따른 높은 이직율, 재소자의 최저권리 유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안

1) 교정시설 등 교정업무 전반을 민간위탁에 하기전에 그동안 종교단체가 교정시설에서 행한 교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로 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3)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이외에 교정시설운영의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민간전문인력 양성과 경험축적을 위해 3대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에 교정시설을 시범운영토록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4. 불교계 제1차 의견에 대한 법무부 답변

1)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영교도소는 특정종교단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연구검토하여 법무부의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2)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나 문제점보다는 실익이 크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고 외국의 경우 교도소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쳤음.

3) 종교단체에 의한 교도소운영시 특정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임.

4) 전면시행의 문제점이 없도록 법무부에서 우선 본제도 도입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향후 실제 시행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운영 주체를 선정할 것임.

5) 영리법인이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 희망자의 인력, 조직, 시설,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6) 법률안에서는 수탁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많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7) 민간이 교도소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재소자 교정교화 활동에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

8) 이미 공청회를 개최(98.11.27)하였으므로 별도의 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음.

9) 미국, 영국, 호주등의 나라에서는 초기의 반대와는 달리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법무부는 민영교도소의 실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검토하는 등 본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에 시행할 예정임.

5. 불교계 제2차 의견 제출내용

1) 각 언론에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추진이 특정종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종교계와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는 민영교도소 운영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장단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으며, 교정행정의 민간이양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다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지난 98년 11월27일 1회 실시하고 더 이상 할 필요없다는 귀 부의 주장은 국가형벌집행권의 민간이양이라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과연 귀 부가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법제정을 추진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급한 법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에 귀 기울이고, 광범위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 제정안의 32조에 의하면 교도소수용자에게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측에서는 종교법인이 설립한

교도소의 경우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활동에 제약을 두어서는 아니된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귀 부에 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교정행정은 결국 국가형벌권의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화에만 주안점을 두는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4) 교도소의 민간위탁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 운영 주체 선정은 인권단체와 종교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선정에 대한 투명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귀 부에서는 대다수 사회단체에서 입을 모아 주장하는 의견을 타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5) 그동안 교정교화 활동에 종교계 등 민간에서 기여한 사항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민영교도소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그동안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행한 교정교화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좀 더 폭 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정당국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운영의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귀 부에서 교도소의 민간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민간전문 인력 양성과 경험축적을 위해 3대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한 민간 단체에 공히 교정시설을 시범운영토록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7) 이상과 같은 사항을 재차 제안하오니 귀 부의 교도소 민영화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6. 불교계 제2차 의견에 대한 법무부 답변

1)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은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뢰를 준비중에 있고, 향후 법제처 심사, 당 정회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1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는 보도와는 달리 여론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자체판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2) 이 법안은 국회의 토론 및 표결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제정, 표준공개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작성 등에 1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또한 이 법의 시행은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시행여부는 그 당시의 국민적 합의, 변화된 교정

여건, 적절한 운영 주체의 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달려 있음.

4) 이 법안에서 수용자에게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은 특정종교 신봉자만을 수용하거나 수용자에게 특정종교식의 교화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당연한 요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단서 조항이 필요없음을 통지하였음.

5) 다만, 감독조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와 교정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에 관하여 당해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할 계획임.

6) 법안제3조를 보완하여 가칭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되,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 및 수탁자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임.

7) 이 법의 제정은 향후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실제 적임의 운영주체가 나타났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길을 열어 놓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당장 민영교도소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아님.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불교계 의견

1) 각 언론에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추진이 특정종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종교계와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는 민영교도소 운영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장단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으며, 교정행정의 민간이양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지난 98년11월27일 1회 실시하고 더 이상 할 필요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국가형벌집행권의 민간이양이라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과연 법무부가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법제정을 추진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성급한 법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에 귀 기울이고, 광범위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제정안의 25조에 의하면 교도소수용자에게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측에서는 종교법인이 설립한 교도소의 경우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활동에 제약을 두어서는 아니된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교정행 정이 결국 국가형벌권의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측에서 주장하는 것처 럼 교화에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4) 그동안 교정교화 활동에 종교계 등 민간부문에서 기여한 사항에 대한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그 동안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행한 교정교화 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고, 민간의 교정 교화 활동을 좀 더 폭 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 다는 취지입니다.

5)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정당국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교정시설에 대 한 운영의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만일 법무부에서 법제정을 통해 교도소의 민간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민간전문인력 양성과 경험축적을 위해 3대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공히 교정시설을 시범·운영토록 해서 교도소 운영경험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오니 귀 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의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8.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조계 종의 입장 논평

1)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제 사회단체 및 불교계 등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12월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2) 본 종에서는 지난 7월 27일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공고되었을 때, 법률제정 추진이 특정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민영교도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교도소의 민간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급한 법 제정 추진을 반대한다는 불교계의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단 1회의 공청회 실시로 더 이상의 의견수렴절차는 필요 없다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본 종에서는 법무부의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이라는 문제를 너무 소

홀히 다루고 있는 점과,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리고 본 중에서는 12월 6일 위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자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와 같은 불교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조차도 심도 있는 논의나 의견수렴절차 없이 단 하루만에 해당상임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작태를 저지른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4) 사회의 여러 인권단체와 불교계 등 국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제정된 현 법률안에 대해 본 중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향후 민영교도소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인권침해와 종교편향적 정책집행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

5) 만일 이후 교도소등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인권을 소홀히 하거나 종교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특정종교의 선교목적으로 흐를 경우 불교계는 물론 여러 인권운동단체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진단

정부의 민영교도소 추진, 방관만 할 것인가?

1. 민영교도소 추진 과정의 문제 -한기총의 로비가 빚어낸 기독교 교도소

정부와 국민회의가 아무런 검증과정도 없이 민영교도소를 급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언론계와 인권시민단체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기총은 이미 지난 1995년 10월 16일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이하 기독교도소추진위)를 공식 구성하였다. 당시 기독교도소추진위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도 행정으로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도우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로비를 해왔다. 지난 96년에도 한기총은 당시 청와대 문정수 민정수석에게 민영교도소 허가를 요청했으나, 김영삼 대통령과 불교계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은 정치권과 관계당국에 대한 로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9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각 당 후보들에게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 때 한기총 기독교도소추진위 간사 이상진 목사가 김대중 대선팀의 박상엽씨(현 국민회의 법사전문위원)를 만났고, 이후 박상엽씨는 남궁진 의원에게 보고하여 98년 4월부터 당정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민영교도소 추진과 관련하여 한기총과 정치권의 관계를 밀착 취재했던 월간 「말」지의 노정환 기자에 의하면 "애초 한기총은 법무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작했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민영교도소에 대해 매우 냉담했었고, 이에 한기총은 정치권으로 로비의 화살을 돌렸다"고 한다. 이것이 맞아떨어져 한기총은 당시 법무부장관인 박상천 현 국민회의 총무에게 브리핑까지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 "법무부 내에서는 민영교도소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민영교도소 추진은 한기총의 치밀한 로비전과 현 정부내 기독교 인사들의 종교편향적 의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2. 민영교도소 무엇이 문제인가

민영교도소=기독교교도소

정부는 민영교도소와 관련, 국회에서 행정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종교단체에 시범운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즉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출발을 기독교교도소로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단순한 출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교도소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의 이런 종교편향적 발상은 국정운영 전반에 스며들게 뻗고, 이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기총 기독교도소추진위는 지난 1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안에 기독교교도소 설립에 착수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 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올해 안에 민영교도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어쩌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자마자 한기총에서 화답한 것이다. 이들은 또 "민영교도소 설립이 단순히 복음전도의 기회를 갖는다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변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민영교도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독교교도소는 수만명에 이르는 수형자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국가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호응이라도 한 듯, 정부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들이나 관계단체에 공개하지 않은채로 자체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모방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민영교도소 조차도 종교교도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종교교도소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그 사회적 부작용과 위험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채로 말이다.

민영교도소 관련 법안은 명백한 위험이다.

우리나라는 다종교사회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는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강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교도소를 특정 종교에서 운영할 경우, 수형자들의 종교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 한기총 기독교교도소추진위는 "기독교교도소(가칭 화평교도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교정의 방향이 성경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자는 7만명 수준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미결수인 점을 감안하면 연인원은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현재 각 교도소의 종교집회 현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수형자들의 종교는 매우 다양하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이들은 모두 기독교 프로그램에 의해 하루 24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형벌집행 장소인 교도소의 특성상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또한 기결수의 경우 가석방 등의 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즉, 국가법의 일부를 위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이제는 종교적 자유마저 박탈하는 종교적 형벌을 추가로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험이며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기업에게도 민영교도소를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영교도소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최우선의 가치는 이윤의 창출이다. 여기에는 교도소 본래의 설립 목적인 교정이나 교화는 맥을 못출게 뻥하다. 이윤창출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고도의 전자통제장치 등 감시 수단이 개입한다면 수형자들의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결국 평소의 인권침해 논란을 해결하고,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민영교도소가 오히려 수형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고도화시키는 결과를 잉태할 것이다.

국가형벌권의 문제

근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형벌권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 따라서 교도소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가형벌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가의 형벌권이 사적 기관이나 민간에게 위임될 경우 그 부작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국민들의 범감정이 그것을 쉽게 용인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자칫 정당성이 생명이어야 할 사법권이 쓸데없는 논란에 휘말려 그 권위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인 교도소의 교도관 권한 남용이나 형벌부과 과정의 불공정이 제기될 경우 그 책임소재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줄속 추진 법안의 문제점

법무부가 마련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줄속으로 처리되었는가가 명확해진다. 우선 법무부는 아무런 사전 검증단계 없이 교도소, 구치소 등 전 구금시설을 민간에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동법 2조) 이는 법무부가 모방하고자하는 미국에서도 일반 성인구금시설이 민영화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는 것이다. 미국은 1960년대 비보안 교정시설을 먼저 민영화 한 이후, 70년대는 청소년 교정시설, 80년대는 이민국의 구금시설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민영교도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던 것이다.

또한 동법 3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규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영교도소 위탁과 관련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 관련 업무는 법무부장관 소관 사항이지만, 선정업무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를 마련해야 함에도 법무부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이처럼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이 문제 투성이인 것은 관련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의 능력 문제라기 보다는 매우 비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줄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끝>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처우기법을 도입하여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은 당해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내에서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업경영의 부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회사 등 그 형태를 불문하도록 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민간참여의 길을 쉽게 하되,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밖에 교정법인의 임원·재산 및 회계 등과 그가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하여 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영교도소등의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9조).
- 마.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정법인에게 매년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 바.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의 처우는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고 있는 국가운영 교도소등의 처우수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40조).

- 사.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도록 함(안 제26조).
- 아.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수용자에 대한 계구·무기의 사용, 병원이송, 귀휴, 징벌, 가석방 심사신청, 석방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형집행의 공정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27조).
- 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면은 당해 교정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9조).
- 차.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행형법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교정법인의 임·직원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및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7조).
- 카.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민영교도소등에 상주하게 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직권 또는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3조 및 제35조).
- 타. 교정법인은 그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8조).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형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라 함은 행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라 함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위탁)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방법, 수탁자의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에의 유용성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업무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해지시의 업무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정법인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

① 교정법인은 이사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그중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직무·결원보충 및 임시리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교정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한 때

제13조(임원 등의 겸직금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이사 또는 그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재산)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 자 하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의 재산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외의 자에게 이를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이를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교정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년도개시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년도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 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

인의 설립형태에 따라 민법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 기타 설립근거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 ① 민영교도소등은 행형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안의 수용자의 수용·관리와 교정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동 시설이 이 법에 의한 수용시설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정법인에게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운영경비)

-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 및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수용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행형법에 의한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용자의 처우)

- ①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수용자의 특이사유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작업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이를 국고수입으로 한다.

제27조(계구의 사용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후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임면 등)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직원의 직무)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형법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제복착용과 무기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당해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이를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구입·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지원·감독 등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에 관하여는 당해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시 소속직원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현황
2. 교정사고의 발생현황 및 징벌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부식의 급여현황
5. 교육·직업훈련 등의 실시현황
6. 외부통학·외부출장직업훈련·귀휴·사회견학·외부통근작업 및 외부병원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현황
8. 직원의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직원의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제38조(손해배상)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행형법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형법을 준용한다.

제41조(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중 직업훈련·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 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한 자 또는 이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인사조치의 요구에 불응한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 자

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 11. 9. 대통령령 제1699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수, 종교인, 언론인, 민간기업경영인 등으로서 교정 및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수탁자선정심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 위탁기간, 계약의 조건, 수탁자선정 기준 및 제안서의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제안요청서를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에 응한 자에 대하여 제안서의 내용과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심사·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당해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사항의 누락방지, 계약내용의 일관성 유지, 계약체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변경
2.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6조(교정법인임원의 임기 등)

①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은 당해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표자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 미리 정한 자가 그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에서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교정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이사회회의 회의 등)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정관이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재산의 구분 등)

① 교정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또는 공여하기로 한 부동산에 한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중 적립금

② 교정법인의 재산중 제1항 각호 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교도소등의 부지매입·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직원교육·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법인이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사동(收容舍棟)

3. 작업장(재료창고 및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목욕탕·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기타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교구

제12조(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세출)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설비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기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기타 수용관리·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기타 교도작업에 따른 제 수입

④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제13조(예산·결산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8월 이전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연도중에 당해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수용정원이 5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는 교정법인
2. 당해 회계연도의 수용정원이 5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 기타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및 수용사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집회시설
5. 위생·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기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교정법인은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안에서 수용자가 상시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및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5조(수용자의 처우)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종교의 교리·교의에 의한 교육·교화·의식 기타 행사에의 참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직원의 임면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직원의 임용자격 등)

-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18세 이상인 자
 -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직무교육)

-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 또는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 또는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행형법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중 위탁계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직권면직)

-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② 교정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킨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처분)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명을 받았을 때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월 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①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임원취임승인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이력서
3. 임원의 취임승락서
4. 임원의 호적등본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

다)

②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에 한한다)

제7조(예산편성요강) ①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합병인가신청) ①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분할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이유서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합병계약서
4. 합병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합병전의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 각호의 서류(합병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합병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분할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유서
2.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분할계획서
4. 분할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 각호의 서류(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해산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산사유, 수용자처리계획 및 직원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감정평가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2조(합병·분할·해산인가시에 붙일 조건) ①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①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시설검사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토목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목적·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검사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감안한 수용공간의 확보

3. 건축·토목과 관련되는 흙
4. 시설·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환기시설 등 구비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난방시설 구비
7. 그밖에 행형법 등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이 정하는 시설기준

제15조(운영경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법인에게 지급할 경비는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당해 연도 교정행정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운영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대한 예산·자금배정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6조(설치비용 지급) ①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에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중 매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교정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 받는 때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①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 호적등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직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 한한다)
2. 면직사유서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장 : 남자 165센티미터 이상, 여자 154센티미터 이상
2. 체중 : 남자 55킬로그램 이상, 여자 48킬로그램 이상
3. 시력 :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제19조(교육 등) ①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주 1시간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복 및 사복착용) ①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식, 그 착용방법은 교도관복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를 정함에 있어 계급 및 소속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분류심사·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명서) ①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2조(무기·탄약의 배정 등)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배치표

4. 무기·탄약 등 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서류

5. 봉급지급 관련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7. 징계관련 서류

8.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10.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용자 신분장부

2. 영치금품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4. 접견·서신대장

5. 교육·교화관련서류

6. 투약·진료 등 의료관련서류

7. 교도작업관련서류

8. 분류처우관련서류

9.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